

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4.5.13.)에서 의결된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24년 5월 31일

목포시의회의장 문차복



목포시의회 규칙 제14호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  
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국외출장은 심사를 하지아니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시·군·구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광역의회) 및 전국(전남)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계획 등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2. 목포시의 국외출장계획에 따라 의장 추천으로 참가하는 경우
3.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에 의한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 결과에 따라 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목포시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